

부
永
二
五
七
〇
七

공
의
가
관
당
포
로
가
진
물
기
공
의
사
의
진

사
의
진

第 號

갑

미완결
건명부
기입제
완
원
결
종
결

행상주의

수집
단기
년
월
일
일
결
계
42811211
시
12/12
합교
일
발
송
문
부
서
12/12
시
장
호
번
계
관

전 명공의권당포 유질물링기공매 표시의건

품의

시
장
부
시
장
91.12.5
용
우

사
회
국
내
무
국
장
장

사
회
과
시
정
과
총
무
과
문
서
계
시
정
계
배
계
계
안
자

수뢰의건
총회각공의권당포의 유질물은 매월링기력으로 포주임
책임하에 매각취분토록 되어 있으나 근래그실시 상항은

불언소수상인(商人)에 한정되어 경정입찰의 근본 취지인
다수인이 응찰하여 최고응찰자에게 낙찰됨으로써 보다 많은 이익이

(각권당주에게 원리금제한 차액은 교부)을 포함에 있을진대
취분일자가 각포별로 상이(相異)하여 그소수상인만이 순화(99%)

(특권) 응찰하므로써 그 본래 취지를 망각하는 실정으므로 각포
유질물 구매취분일자를 통일(統一)하여 시민의 이해대한 인식

을 새롭게 하므로써 본래공익권 당포실치무적인 공익을 도모하며
운영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좀더 광범하게 일반에게 주지

철리를 기하고려 다음과 같이 각공의 권당포 또는 각구침을
통하여 고시코려 재결을 양형하나이다

고시안 병지와 같음

고시안지 11월 26일 이후

(본청계시판, 각공의 권당포계시판, 각구침계시판 등)

재실은 계재공고문 이상과 계상 평판함

서울특별시고시래 235호

서울특별시공익권당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공익권당포의

유질물을 매월 다음과 같이 매각한다

단기 49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장 허 경.

1. 입찰물건의 종류와 수량

1. 종류 류 의류, 장신구, 기타 (권당기일이 경과된 유질물건)

2. 수량 매월 각 권당포에 따라 달라짐

2. 입찰방법

일반경정입찰

3. 입찰일시 및 장소

매월 1호 일시

매월 1호 일시

매월 1호 일시

매월 1호 일시

매월 1호 일시

매월 1호 일시

매월 1호 일시

매월 1호 일시

매월 1호 일시

매월 1호 일시

매월 1호 일시

매월 1호 일시

매월 1호 일시

매월 1호 일시

매월 1호 일시

매월 1호 일시

매월 1호 일시

매월 1호 일시

매월 1호 일시

매월 1호 일시

매월 1호 일시

매월 1호 일시

매월 1호 일시

레드안

부시장

각구청장

앞

동건명

본전 시립 각공익권당포의 권당기일이 경과된 유질물(梳

質物)은 별지 고시와 같이 매월링기적으로 일반정재

입찰에 ^{의한} 매각 취분게 되었으니 귀구일반에게 주지도록

고시문 계침하시압

(비공리노리시물은 침공함공기)

래
안

부
시
장.

각
국
장.

앞.

동
권
명.

본
건
각
시
립
공
의
권
당
포
의
권
당
기
일
이
경
과
된
유
질
물
(流
質
物)

을
별
지
고
시
와
같
이
매
월
권
기
적
으로
일
반
정
평
안
책
에
의
하
여

매
개
월
하
게
되
었
압
기
이
에
통
지
할

(별
지
는
고
시
문
을
참
공
하
는
것
)

리
안

사회국장

내부국장

앞

동권명

본길 당국관하 각공의권당포의유질물(流質物)을벌저고사
와갈이 매월정기칙으로 매각취분하게 되엿으나 고시문
을시보(市報)에게제하여주시기바라나이다

(벌저고사 고시문을출침공하옵기)

외
六
안

각질당포주임 앞

부시장

동건명

본길 종래 실시 하여오든 유질물 취분은 별지 고시에 의거 매각
취분하도록 되어오며 그 고시문을 각구청 및 시보(市報) 신문
를 통하여 일반에게 주지^게 하였으나 양지 하시고 조례 제 13조
의 규정을 엄중 시행함은 물론 이후 본건 시행에 만유루
없도록 만전을 기 하시 압.

별지 부 고시문을 첨부 송할 것